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1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구합16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A

피 고 ○○광역시 ○○청장

변 론 종 결 2015. 11. 12.

판 결 선 고 2015. 12. 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4. 3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,129,370원, 지방교육세 2,712,930원, 농어촌특별세 1,356,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1

가. 원고는 B 외 5명을 상대로 ○○구 C 도로 6,572㎡ 외 9필지(이하 '이 사 건 토지들'이라 한다)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2. 2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. 6. 27.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 소판결(2012가합9457호. 2013. 8. 8. 확정 됨)을 선고받은 다음, 2014. 1. 8. 피 고에 게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면서 시가표준액 670,390,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,815,630원, 지방교육세 2,681,560원, 농어촌특별세 1,340,780원, 합계 30,837,970원의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다.

나. 그런데 원고가 신고납부기한인 2014. 2. 3.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, 피고 는 2014. 3. 17.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7,129,370원, 지방교육세 2,712,930원, 농어촌특별세 1,356,450원, 합계 31,198,760원을 부과·고지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. 5. 27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위 심판청구가 2014. 10. 22. 기각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항변

이 사건 토지들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, 피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1

살피건대,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,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, 조세심판원이 2014. 10. 22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그 무렵 원고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소가 2015. 7. 1.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(원고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탓에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,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).

따라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홍일

판사 이홍관

판사 김정웅